

'99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시책방향

최 염 순

농림부 축산정책과 축산사무관

1. 머리말

우리나라는 IMF이후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축산물 수요를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가축사육기반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민생활이 나아질수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가축사육 형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급속히 규모화·집단지화되면서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자주 겪어왔던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 등으로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이제 축산분뇨를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축산분뇨를 최대한 자원화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축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부가 약속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수질개선」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농림부는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를

중심으로 금년도 축산분뇨 시책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

2. 축산분뇨에 대한 정부시책 가. 기본방향

축산분뇨처리의 기본방향은 앞서 밝힌 국내의 축산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퇴비화·액비화 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자원화(Recycle)를 촉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부족 등 불가피하게 버려야 할 가축분뇨와 세정수 등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나 농가의 개별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정화처리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자원화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축산분뇨 관리의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축산분뇨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함께 보전해 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세부 추진계획

□ 축산분뇨 실태조사 실시

축산분뇨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축산분뇨의 발생량과 처리실태에 관한 정확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전국의 주요 상수원인 4대강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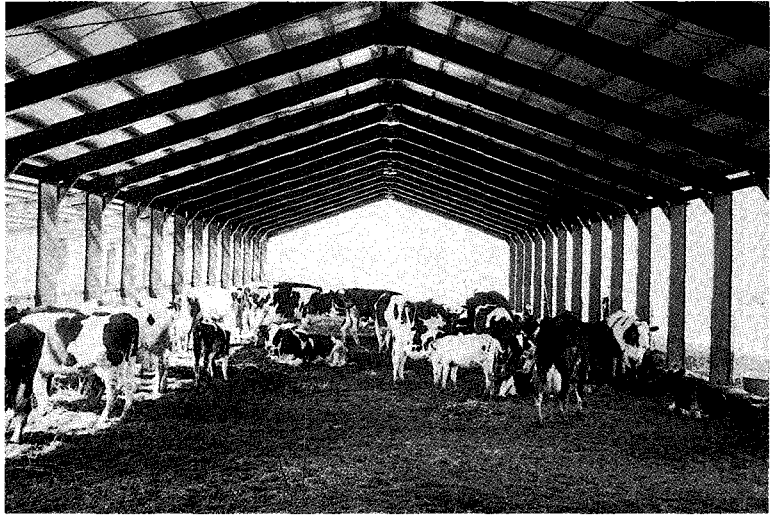
한강(팔당호)·낙농강·금강·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축산현황, 축산분뇨 발생량, 처리 및 자원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조사계획으로서 1999년 2월 20일부터 6월 30일(당초 5월 20일)까지의 기간중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한강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축산농가를 호별 방문하여 축산분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에 새만금 유역과 전국의 나환자 정착촌에 대하여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1단계 조사결과는 6월중에 전산집계·분석하여 축산분뇨처리대책을 보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단계 조사계획으로는 1단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보완하여 나머지 낙농강·금강·영산강 유역에 대한 축산분뇨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사된 가축사육 및 축산분뇨처리 관련 통계자료는 축산분뇨시책 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며, 앞으로 매년 1회씩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축산분뇨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의 종류별 연간 또는 1일 축산분뇨 발생량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축산분뇨의 배출원단위(排出原單位)는 오래전에 고시된 것이므로 그간 가축개량, 사료이용효율의 향상 등 축산기술 발전과 가축관리방법이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 되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미 축산분뇨배출원단위에 관한 연구를 농림기술 기획연구과제로 채택,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연구하게 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에 축산분뇨배출원단위의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늦어도 오는 6~7월중에 개정 고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 배출원단위가 개정되면 축산농가의 액비살포를 위해 확보해야 할 초지 또는 농경



지의 면적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축산분뇨 관리제도 개선

축산분뇨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개정 공포된 오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축산면적기준으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규모에 따라 규제단계가 단순화 된다.

다시말해서, 현행 일정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를 3단계 즉, 허가·신고·간이정화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2단계 즉, 허가·신고로 축소되고, 간이정화조의 사육규모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지 않으나 그 방류수수질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간이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1,500mg/l 이하)은 상향 조정될 것이므로 새로이 축산분뇨시설을 하는 농가의 경우 장차 축산분뇨의 규제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처리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정된 오분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관리의무가 부과되므로, 불가피하게 축산분뇨를 축산폐수의 형태로 배출하는 경우 축산 분과 노의 분리는 물론 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시·군이나 민간의 위탁처리업체가 수거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게 한다.

또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분법 상 자원화와 관련된 용어정의중 '축산폐수'를 '축산분뇨'로 개정하고, 축산분뇨처리의 1차적인 책임이 시·군·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개정된 오분법과 축산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축산분뇨자원화계획의 수립은 물론, 자금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축산분뇨를 정화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그 처리의 기준이 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주로 BOD 기준에 의해서만 관리되고 있지만, 오분법에 의하여 이미 예고된 바와 같이 2000년 1월 1일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등 특정지역안에서 가축을 허가규모 이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하천·호소에 부영양화의 주 원인물질인 질소는 1당 260mg 이하, 인은 1당 50mg 이하로 배출기준을 추가로 규제하게 되므로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에 해당 축산농가는 사전 점검을 통해 필요한 경우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 축산분뇨의 관리체계 정비

앞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기본계획은 중장기 축산시책과 반드시 연계하여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축산분뇨처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각 시·도 및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축산 기본정책에 축산분뇨자원화대책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역별·수계별 축산분뇨 자원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할 방침이다.

농림부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21세기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자계획(시안)"에도 축산분뇨 자원화 및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이다.

축산분뇨시설 지원자금은 각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 축산분뇨자원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농림부는 시·도에, 시·도는 시·군·자치구에 국비 예산을 배정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이나 장비구입 자금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한편, 축산분뇨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체단체의 축산 및 환경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축산부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추진과 시설자금지원을 맡고 있고, 환경부서는 축산분뇨배출시설의 허가와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 관리체계로서는 효과적으로 축산분뇨를 관리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자체단체의 축산부서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그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여 효율적으로 축산분뇨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체 구조조정과정에서 축산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책추진에 애로가 크다.

□ 축산분뇨의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및 관리기준 마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하여 축산분뇨의 퇴비화·액비화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년도에 총 950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표 1〉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1999년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제4권(1071~1098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축산농가가 시·군·자치구의 축산부서에 사업계획 및 자금을 신청하면 시·군·자치구에 있는 축산분뇨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되는데,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의 축산 부서에 직접 상담하면 지역에 배정된 예

〈표 1〉 1999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호·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국비 지원 예산액(농특회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별·공동시설	4,980	54,875	32,925	87,800	21,950	109,750
정착촌구조개선	10	6,000		6,000		6,000
통합제조시설·이동식 통합제조기	10	750	450	1,200	300	1,500
합 계	5,000	61,625	33,375	95,000	22,250	117,250

1999년도의 이 자금지원 수준은 축종별 축사면적기준으로 축사 m²당 돼지는 74천원, 소·닭은 21~34천원의 한도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또한 농가호당 지원규모(개소당)는 단독시설의 경우 2억원 내지 3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8억원 내지 15억원 한도 범위에서 국비보조 50%, 융자 30%, 농가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장기 저리자금으로서 이자는 연 4%이며,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산사정에 따라 자금 지원규모와 지원 가능여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 시설자금은 소·돼지·닭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단독(개별)시설은 시·군·자치구에서 지원하고 공동시설은 시·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1999년도의 이 자금지원 수준은 축종별 축사면적기준으로 축사 m²당 돼지는 74천원, 소·닭은 21~34천원의 한도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며, 또한 농가호당 지원규모(개소당)는 단독시설의 경우 2억원 내지 3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8억원 내지 15억원 한도 범위에서 국비보조 50%, 융자 30%, 농가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장기 저리자금으로서 이자는 연 4%이며, 대출기간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다만, 나환자정착촌에 대한 시설자금은 금년까지 100%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의 용도는 축분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과 축산분뇨처리장비 구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부지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특히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축산농가들이 자담분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어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원이 취소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므로 사업대상 농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은 액비화 이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액비를 유기질비료로서 더 많이 이용해야만 축산분뇨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축산분뇨의 액비화 이용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당 2~3개소씩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도 특별히 지원하며, 내년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축산분뇨를 정화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인 방법이 못 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화방법으로 처리하고 가능한 자원화하여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 작물별·계절별 축분퇴비와 액비의 사용량과 경지면적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농작물 재배농가에 보급하여 화학비료 대신 축분퇴비와 액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나갈 계획이다.

IMF 이후 목재의 수입이 크게 줄어 톱밥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금년도에 톱밥제조시설과 장비 지원을 늘리고, 산림청이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숲가꾸기사업에서 수집된 간벌목과 산림에서 버려진 폐잔목을 활용하여 축분퇴비화 과정에서 수분조절재로 쓰이는 톱밥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축분퇴비·액비의 수요 확대 및 유통체계 확립

축분퇴비와 액비의 이용 확대를 통해 도양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이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축분퇴비의 도양환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도별로 생산자단체인 지역축협과 농협을 각 1개소씩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이 센터를 통해 축분퇴비와 액비의 생산·수요·판매량, 가격 등 유통정보를 생산농가와 이용농가에 안내하여 축분 퇴비의 판매와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협·축협·임협 중앙회로 하여금 협의회를

〈표 2〉 축분퇴비 이용확대를 위한 생산자단체별 역할

축협	농협	임협
축산분뇨 자원화	환경농업 실천	산림자원이용 효율화
· 양질 축분퇴비의 생산· 판매 알선, 정보제공 · 축분퇴비·액비화 시범사업 추진, 기술상담실 운영	· 퇴비의 우수성 홍보 · 경종농가 축분퇴비 사용 지도 · 흙살리기운동 적극 전개	· 톱밥생산 공급 · 톱밥가격 정보 제공 · 축산분뇨의 산림 이용 방법 개발

〈표 3〉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별 세부 조정내역(환경부)

(단위: 개소)

구분	당초시설	계속추진	사업계획 조정 내역				사업보류
			시설개선	용량축소	추진방법 변경	계	
운영·시험가동	12	12	9	- (1)	1	10(11)	-
공사·설계중	45	29	12	6(10)	3(4)	21(26)	16
합계	57	41	21	6(11)	4(5)	31(37)	16

※ ()는 시설개선 병행추진지역 포함

구성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생산자단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축분퇴비의 판매 촉진과 톱밥공급을 원활하게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축분퇴비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협을 통해 축분퇴비의 가격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 물량은 40만톤으로서 20kg 포당대 700원씩 보조하여 총 140억원을 지원하며, 내년도에는 지역축협을 통해 지원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작물과 초지의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비료는 가능한 화학비료 대신 축분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축분퇴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불량 축분퇴비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협에 각각 고발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축분퇴비의 연간 생산·유통량을 보면, 1991년도에 약 14만톤에서 1997년도에는 12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축분퇴비는 화학비료에 비하여 값이 3~5배 비싸고,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수요를 계속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금년도 비료수급계획을 보면, 농업용으로 생산 공급할 화학비료는 총 2백 54만톤(실물량기준)이며, 유기질 비료의 생산계획은 140만톤인데 그 대부분을 축분퇴비로 생산 공급하게 된다. 비료성분량인 질소·인산·카리를 기준으로 연간소비량을 보면, 대략 120만톤 정도이며, 축산분뇨중 자원화 할 수 있는 물량을

비료성분량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40~60만톤이 되는데, 가격과 시용상 문제가 해결 된다면 화학비료 소비량 120만톤의 75%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내여건은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축산노처리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축종별·규모별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모형과 축산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8종)를 개발하여 건설교통부의 심의·고시를 마치고, 환경부에서 심의중인데, 심

의가 끝나는 대로 시·군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우수 농가를 발굴하여 비디오 등 시청각 홍보자료와 우수 사례집을 만들어 축산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아울러 농가교육을 통해 축산분뇨 자원화 및 정화처리에 관한 신기술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정상화

환경부에서는 작년도에 가동·시험가동중 또는 건설·설계중인 모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기술자문을 거쳐, 올해 시·군별로 처리공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한 결과(표 3)과 같이 당초 시설계획의 57개소중 16개소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41개소는 계속 추진한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그 운영 및 관리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군·자치구별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축산폐수의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단체인 지역축협이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하게 하고, 축산폐수의 수거·처리비용은 농도와 위탁처리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 비용징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수거 및

〈표 4〉 연차별 투자지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분야	1998	1999	2000~2004	계	비고
《축산분뇨 처리·자원화 사업》	1,495	1,102	5,249	10,508	농특회계
·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1,363	938	4,279	9,242	
· 톱밥제시설 설치자금	12	12	60	84	
· 축분퇴비구입 차액보전	100	140	910	1,150	국비·농협
· 이동식톱밥제조기등 지원	20	12	(미정)	32	'99산림청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양여금
· 공공처리시설 설치자금	414	308	1,780	2,502	
합 계	1,909	1,410	7,029	13,010	

※ 2000년 이후 투자계획은 잠정안으로 1999년 하반기에 재검토후 확정 예정

처리비용을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다. 연차별 투자계획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지원 계획(안)을 보면(표 4)와 같으며, 1999년도 투자지원계획은 총 1,410억원인데 이중 자원화사업에 1,102억원, 환경부 소관사업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308억원을 투자한다.

3. 맺는말

오늘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하에서는 적어도 관세장치만 남고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우리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속에 살고 있다. 머지 않아 21세기가 도래한다.

이 새천년이 시작되게 될 2001년부터 우리의 쇠고기 시장마저 완전히 개방된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 말할 나위없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화학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축산분뇨를 완전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막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축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속에서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식품을 값싸게 생산 공급하여야 하는데, 축산물의 생산비를 낮추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축산분뇨를 어떻게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축산여건을 고려할 때 축산분뇨처리는 기본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최대한 자원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 축산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축산농가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여 적정하게 잘 처리해야 하는 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들은 사육규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축산분뇨시설은 시설투자과 그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착수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투자와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노후시설의 보원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분퇴비와 액비의 이용을 확대하고, 축산분뇨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기술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같이 축산분뇨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모든 축산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해 나갈 때 축산업은 경쟁력을 더욱 높이게 되고, 나아가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504-9431)

